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. 2. 28 선고 2022가단5190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강남

담당변호사 정연호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12. 13.

판 결 선 고 2023. 2. 28.

주 문

-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D와 피고들 사이에 2021. 8. 2.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들은 D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1. 8. 10. 접수 제17537호로 마친 각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D와 피고 B 사이에 2021. 8. 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B은 D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1. 8. 10. 접수 제17538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채권

1) 원고는 D과 2021. 3. 29.자 해삼공급계약에 따른 위약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2. 2. 15. “D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0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판결(21가단58040)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2) 이후 원고는 2022. 9. 13. 위 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의하여 ‘D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,102,110원임을 확정한다’는 내용의 소송비용확정결정(2022카합10123)을 받았다.

나. D은 2021. 8. 2. 배우자인 피고 B, 자녀인 피고 C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‘제1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(이하 ‘제1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,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(이하 ‘제2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 B와 증여계약(이하 ‘제2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1. 8. 10. 접수 제17537호로 제1부동산에 관하여, 같은 날 접수 제17538호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순차로 ‘제1, 2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호증, 제6호증의 1, 2,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, 변론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제1, 2증여계약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

다툼 없는 사실,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제1, 2증여계약 당시 D은 적극재산으로 제1, 2부동산1) (제1부동산 공시지가 74,448,000원), 충남 태안군 E 임야 61㎡(이하 '제3부동산'이라 한다), F 전 306㎡(이하 '제4부동산'이라 한다, 제3, 4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 3,946만 원, 피고들 주장 제3, 4부동산의 시가합계 약 1억 4,000만 원)이 있었던 반면,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 2억 원, G조합에 대한 채무 1억 9,000만 원(제1, 2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3,000만 원+제3, 4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,000만 원)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피고들은 D의 H에 대한 1억 원의 전도금 반환채권, I에 대한 1억 2,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,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,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

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(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),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D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물적 담보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채권이 일반 채권자의 적극재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.

따라서 제1, 2증여계약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제1, 2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던 제1부동산을 피고들에게, 제2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제1, 2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

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행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D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,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제1, 2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제1등기에 관하여, 피고 B은 제2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강문희

목 록

1. 충남 태안군 J 참고용지 990㎡
2. 충남 태안군 J 지상 세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162.54㎡

1) 제2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이를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나 제2부동산의 신축연도, 구조, 용도, 위치에 비추어 최소한 제1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.